심층보도의 현황과 문제점

최 창 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TV 매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영상의 사실성과 현장감의 효과는 물론, 그 동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널려 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의 개선이란 공감대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층 보도물이 그만큼 인기 있는 노작으로 평가되는 것 못지않게 생겨나는 역기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제보자들에 대한 인권 및 신변보호, 선택하는 주제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프로그램 편집상의 사실성 및 객관성, 문제제기로 빚어지는 또 다른 문제의 발생위험 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I.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사회문제와 같은 주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치는 새로운 보도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활 안팎에 가리어진 여러 가지의 사회적 부조리나 병폐 등을 생생하게 TV 화면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TV 매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영상의 사실성과 현장감의 효과는 물론, 그 동안 드러나지 않은 상해에서 피상적으로 널러 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의 개선이란 공감대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더욱이 취재현장에 접근해서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당사자와의 인터뷰까지를 실시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고발성 기획프로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심층 보도물이 그만큼 인기 있는 노작으로 평가되는 것 못지않게 생겨나는 역기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제보자들에 대한 인권 및 신변보호, 선택하는 주제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프로그램 편집상의 사실성 및 객관성, 문제제기로 빚어지는 또 다른 문제의 발생위험 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TV 매체가 가지고 있는 동시성 · 동소성 · 현실성 등 때문에 타 매체에 비해 TV 를 통한 고발성 심층 보도물에 대한 여파는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간에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KBS-TV 의 「추적 60 분」 MBC-TV 의 「레이다 11」 등을 비롯한 여러 고발성 기획 프로들이 TV 화면을 통해 방영되기 시작한 후 심층보도 프로그램의 정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본 고에서는 먼저 방송 매체의 보도기능과 심층보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심층보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심층보도와 제반 인격권과의 갈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방송매체의 보도적 기능과 심층보도

1. 방송매체의 보도적 기능

방송의 기능을 논하는데 있어서 「매스 ·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 입각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통설에 따르면 「매스 ·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은 보통 4 기능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보도하는 보도기능, 본격적인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직접적으로, 일반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간접적으로 시청자의 정신세계를 지도하는 지도기능, 인간의 피로, 불안, 욕구불만을 위안하고 해소시키는 오락기능, 정부나 각종 단체에서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내용의 전달에서부터 상품이나 회사의 선전 작용인 광고기능의 분류가 그것이다. 위의 4 기능 중 여기서는 보도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방송매체가 가지는 보도기능의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일상 회화를 사용한다는 데서 현실적인 감각작용과 대인적 자극이 다른 미디어보다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오락적 내용의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보도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저해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내용이나 의미보다는 화술이나 인상이 더 크게 작용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판단이 앞서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보도는 속보성을 중시하는 나머지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소홀하게 되어 심층보도와 분석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리고 전파 미디어가 가지는 보도 기능상

특징으로서의 친근성은 사람의 목소리에 대한 친근성에서 유래되며, 따라서 이것은 문자를 해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보도의 전달을 가능케 해 주는데, 이 특징은 일면 경청하거나 주시하지 않고 그저 정신을 놓은 채 듣고 보는 경향을 조장할 수도 있다. 방송 미디어는 또한 전파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 보내는 측이나 받는 측의 제한성을 면할 수 없으며, 특히 정부에 의한 감독과 통제가 따르기도 한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집단적 시청이 가능하므로 같은 프로그램을 함께 듣고 보았다고 하는 동료의식과 군중심리 조장은 냉철한 비판의식이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이 앞섬으로써 여론형성에 저해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2. 심층보도의 개념 및 특성

방송매체의 보도적 기능의 하나가 본 고의 주된 관심사인 심층보도 문제이다. 이에 심층보도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고발성 기획프로는 그 성격상 심층보도(depth or in-depth reporting)라 할 수도 있고 또 조사보도(investigative reporting)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류의 프로그램들은 심층보도와 조사보도를 모두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듯하다. 여기서 심층보도와 조사보도에 대한 한계와 범위를 그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심층 보도란 무엇인가?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는 정의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심층 보도란 독자들에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관하여 그것의 원인(why, wherefore)을 포함한 모든 기본적인 사실과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다』

『심층 보도란 어떤 특정의 사건이나 문제에 관하여 그 배경, 경위, 분위기 등 모든 전모를 알게 함으로써 그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심층 보도란 사건을 독자들의 환경 안에 갖다 주는 보도형태로써 될수록 많은 기본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심층 보도란 간단하고 명료하게 사건의 일면이나 현장을 보여주는 피상적 보도에 반하여, 사건을 될수록 자세하게 전달해 주고 그 사건의 원인 등을 포함한 모든 주변상황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사 보도란 무엇인가? 역시 몇 가지의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보도란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사실들을 밝혀낸 결과로 얻어진 것이며, 올바른 조사보도에는 전혀 의견이 개입되지 않았다. 즉, 과학적인 접근과 유사한 것으로 어떤 주장을 개입시키지 않고 사건보도자체에서 스스로 결론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조사 보도란 기자가 스스로 조사하고 추리하면서적극적으로 진실을 찾아내어 밝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기자는 정보의 전달자이면서 동시에 탐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즉, 「조사보도란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사실을 기자가 탐정과 같은 입장에서 그것을 찾아내어 밝히는 보도방식의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심층보도와 조사보도를 설명한 수 있으나 사설상 그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보도방식으로 취급되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조사보도는 심층보도 한 종류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 보도방식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중 가장

특이할 만한 공통점은 이 두 보도방식이 모두 사건지향적(event-oriented)인 보도방식이 아니라 상황지향적(situation-oriented)인 보도방식이란 점일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이 결국 위 두 가지 보도방식의 정기능, 역기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마련해 준다고 볼 수도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매체를 통한 고발성 기척프로를 통상적으로 심층보도라고 일컫는 데는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III. 우리나라 심층보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심층보도의 현황

83 년 2 월 27 일 비록 기대이하의 실패이긴 했지만 『한국의 할리우드』라는 제목의 KBS-TV<추적 60 분> 프로그램이 첫 전파를 탔다. 이어 방영된 3 월 6 일의 『한국판 몬도가네』부터는 <추적 60 분>이란 프로그램의 성격이 선명해지면서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매주 일요일 밤의 <추적 60 분> 프로는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면서 많은 화제와 영향력을 사회 구석구석에 던져 주었다. <추적 60 분>에 방영된 특정단체나 상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항의와 칭찬도 받았고, 시청자들에게서도 다양한 종류의 성원과 비판도 받았다. MBC-TV 의 경우는 <레이다 11>이란 프로를 통해 <추적 60 분>과 같은 고발성 기획프로그램 제작에 참여를 하였다.

또한 KBS 에는 이와 같은 사회 고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프로그램이 <추적 60 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라디오의 경우 792KHz 라디오 서울에서, 매일 방송되는 <가로수를 누비며>에서 방송시간의 일부를 할애해 교통문제에 관한 고발과 심층보도를 하고 있으며, 711KHz 제 1 라디오에서는 소비자 고발을 주로 하는 <여성 스튜디오>가 있다. 그러나 라디오보다는 TV 에 사회 고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심층보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송되고 있는데, 매주 일요일 제 2TV 를 통해 방영되는 <시민법정>도 그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82 년 말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2 년 여 동안 계속되어온 <시민법정>은 그 동안 「바캉스」,「아동복」, 「암표」, 「비디오 다방」, 「계」 등 사회문제 및 현상과 세태를 재판형식을 빌어 고발해 왔다.

매일 아침 KBS-1TV 로 방영되는 주부대상프로그램 <스튜디오 830>도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소비자 고발을 다루고 있다. 소비자들이 질의 불량을 호소하는 상품을 접수하고 이를 여성단체와 협의해서 처리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때로는 직접 카메라를 고발대상 회사로 옮겨 왜 이런 불량품들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직접 취재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역시 보다 본격적이고 심층적인 사회 고발성 프로그램은 KBS-1TV 로 일요일 밤에 방영되는 <뉴스 파노라마>와 KBS-2TV 의 <추적 60 분>을 꼽을 수 있다. <뉴스 파노라마>는 80 년 가을 컬러 TV 가 방송되기 이전부터 당시에는 생소했던 TV 의 심층보도라는 영역을 구축하면서 사회 고발적인 성격을 띤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즉, 음주운전문제, 주택가에 파고든 사우나탕 문제, 무허가자동차 정비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심각성 등을 심층취재를 통해 고발한 것이다.

또 하나의 심층 고발프로그램인 <추적 60 분>은 <뉴스 파노라마>보다 2 년 반이나 늦게 시작되었지만 TV 매체 특유의 영상이 갖고 있는 강렬한 영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 병리적인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고발함으로써 TV 방송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화제와 충격을 일으킨 프로그램의 하나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83 년 2 월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동안 「미혼모 문제」, 「기도원 실태」.「가짜시계」, 「가짜녹용」 등 50 여 편을 방송하면서 사회고발의 성격을 띤 심층보도의 대표적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상과 같은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어떤 사건의 드러난 현상을 단편적으로 알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하는 시청자들의 욕구때문에 더욱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심층보도로 인한 문제점 또한 다양하고 심각하다.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심층보도의 문제점

TV 의 심층보도는 TV 매체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우리사회의 그늘진 지대에 빛을 던지고 그 설해를 파헤쳐 보임으로써 그런 면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모으게 하여 개선의 기틀을 마련한다면 대단히 가치 있고 유용한 프로가 될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성도 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그것은 숨겨져 있던 것을 노출시키고 비밀로 되어 있던 것을 탐색해서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생활의 영역으로 침입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를 침해할 위험도 있으며, 취재대상이 된 사람들과 여러모로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심층보도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탐색의 대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가를 미리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것에 불과한 것을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인식을 그르치게 하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심층보도가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심층보도에 대한 문제점도 다양하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형평원칙(Fair Treatment)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TV 화면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여파가 크다는 것을 인지할수록 그것이 빚어낼지도 모를 그 이면에 대해 관심을 높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우선 형평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치적 주제에 대한 묵시적 금기 사항이다. 그 많은 주제와 다양한 문제들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고, 인기도 얻었지만, 정부에 대한 문제나 정치적 부조리 혹은 의문에 관한 주제는 한건도 없었다. 원래 심층취재의 가장 활발한 분야가 정치적 문제의 영역이었던 외국과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명시되지 않은 금기사항이 존재하는 한 방송을 통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심층보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기관, 단체, 개인을 막론하고 모두 객관적인 척도에 의해 문제나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는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방영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도는 정치적 사건의 심층보도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본보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심층보도의 생명인 본질적 접근보다는 피상적 취재보도에 아직도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주로 사건이나 문제의 심층적 원인분석보다는 표면에 나타난 현상위주의 결과제시에 그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즉, 사건이나 문제의 전체 상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단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제시에만 매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프로그램 제작여건이 미흡한 상해에서 오는 한계성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올바른 심층보도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꼭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셋째, 지나친 센세이셔널리즘에 의한 보도 성향이다.

우리나라 심층보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충격과 경악을 많이 갖다 주지만 그 문제에 대해 차분히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제선정, 프로그램 구성 등 전반적인 제작의도가 흥미위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음악 처리나 카메라의 포착각도, 진행자의 진행의도 등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의미의 심층보도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현장제시를 통해 시청자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제작원칙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데도 그렇지가 못한 실정이다.

넷째, 지나친 인권침해 문제이다.

휴대용 카메라가 널리 이용되면서 이른바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인권침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도의 자유는 사실을 전하고 알리는데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취재활동에는 언제나 제 3 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데도 이점에서 우리의 경우는 매우 소홀한 감이 든다. 사적 생활이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 곧 피해자가 사진을 공개 당함으로써 불패하거나 불안스러운 생각을 갖게 한다든가 공개된 내용이 사생활상의 사실로 인정될 위험이 있을 때는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다수 시청자의 반응이 좋고 인기가 높다고 해서 사건현장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의 롱 쇼트로 몰래 사진을 적거나 도청까지 하면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가 잦은 것이 현실이다. 대체로 범죄행위가 아니거나 묵시적이라도 당사자의 승낙이 없고서는 사적 생활이 노출 당할 수 없도록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우리의 경우는 이 원칙이 자주 무시당하곤 한다. <추적 60 분> 제작팀에 대한 지원은 장비나 인력면에서 다른 프로에 비해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그것은 시청률이 높은 프로에 대한제작지원이란 점에서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선마이크로 취재원이 눈치채지 않도록 녹음할 수 있는 장비나, 라이트를 켤 수 없는 어둠침침한 실내에서나 카메라를 직접 들이댈 수 없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와 같은 우수한 장비가 취재원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흉기로 쓰여져서는 안될 일이다.

다섯째, 예방적 기능이나 문제의 치료를 위한 처방보다는 단지 드러내놓는 데만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고발성 기획프로가 궁극적으로는 전체 사회의 개선이란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층보도가 되는 문제에 대한 예방과 처방의 의견제시가 세련되게 제시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심한 경우에는 문제제시에 머물러, 비리의 현장이나 부조리의 실재를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욱 상태를 악화시킬지도 모른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즉, 결혼세태의 현장을 추적하여 배금주의나 허세에 대한 반성을 가져다 주려 했던 제작의도가 오히려 잘못된 결혼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성윤리의 퇴폐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에 대한 충동과 욕구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건자체의 외형적인 사실보도뿐 아니라 전체 상황적 측면에서 정확한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피상적 보도문제와도 유사한 문제인데, TV 화면을 통한 보도는 사실상 현장을 그대로 비추고,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 그대로의 사실일 수는 없다. 그런데다가 제작가가 원하는(또는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편집을 위한 제 요소들이 변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가변적인 TV 화면을 전체상황 안에서 조화 있게 구성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확성을 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물론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심층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J. P. 존스」가 제시한 심층보도를 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제의 중요성과 의미를 시청자에게 올바르게 이해 시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무엇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왜 그것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문제의 배경과 경위를 비롯한 전체상황을 제시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넷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의견이 아닌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해답보다는 문제제기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섯째, 깊숙이 사건을 파헤쳐서 일반국민이 알지 못하던 사실까지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것을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특히, TV 의 경우는 다른 매체보다도 그간 숨겨져 있던 사실들을 보여줄 때 그것이 영상으로 생생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충격이나 놀라움이 큰 만큼 그에 의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의 위험도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Ⅳ. 심층보도와 인격권과의 갈등

1. 명예훼손

개인적 법익과 사상표현의 자유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며, 따라서 그것이 언론의 중요한

법적 통제가 될 수 있는 최초의 분야가 바로 명예훼손의 경우이다. 이것은 매스 미디어에 대한 법적 통제로서의 분야이기도 하지만 매스 미디어의 책임을 일깨우게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심층보도의 문제가 시청자의 명예훼손이란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명예의 보호는 인격권의 하나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이다. 명예훼손을 시켰을 경우 법에서는 형법상, 민법상 책임을 묻게 돼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다같이 면해 주는 특유한 면책사유를 소개함으로써 명예훼손과 심층보도에 대한 갈등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진실의 증명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의 증명은 가장 중요한 면책사유가 된다. 특히 형법은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민사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 경우 증명은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실 증명의 요건은, 첫째,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관계되는 사실에 관계되어야 하며, 둘째, 오로지 공익을 도모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셋째,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닌 선량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2) 정당행위

법률상 정당한 행위는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그 위법성이 면해진다. 사회기구로서 언론의 보도행위는 그것이 사행에 관한 것이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업무상 정당한 행위 간주해서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3) 공정한 논평

언론이란 보도와 더불어 논평을 하게 되는데, 논평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인신공격에 흐르고 개인의 명예를 해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평이 공정하게만 이루어지면 아무리 명예훼손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면책케 함으로써 언론 유를 보장하자는 것인데, 심층보도를 통한 논평이 빚게 되는 명예훼손의 문제와 대조적인 등 요소가 되고 있다 하겠다.

(4) 정당행위 및 긴급피난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개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과 방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법성이 면해질 수 있다.

(5) 상대방의 승낙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비록 묵시적이지만 승낙했을 경우 면책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취재대상이 되는 사람의 승낙이 없을 경우에 보도함으로써 명예훼손을 빚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매체측에서 져야 한다.

2. 프라이버시권

개인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간에 갈등을 일으키며, 따라서 언론자유에 중요한 법적 통제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두 번째 분야가 프라이버시의 권리이다. 명예훼손과 같이 인격권의 하나이며 개인의 권리의식이 점차 분화되며 현대와 같은 고도로 발달한 정보사회가 등장하면서 급격히 법적 권리개념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개인의 권리 중의 하나이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인간의 생명권에서 도출한다면 그 권리는 인간의 생성과 더불어 있었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 권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의 권리이고 「홀로 가만히 내버려질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만한 사회적 변화가 그 동안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히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법적 개념으로 혹은 권리 개념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것 같다. 이 권리가 최초로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문제된 사건이 사무엘 워렌(Samuel D.Warren)과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의 유명한 『프라이러시권리』의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프라이버시 개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프라이버시 권리는 공공 혹은 일반의 이익에 관계되는 사실 외의 어떠한 사설도 공개하지 않는다.

②프라이버시 권리는 명예훼손법에 저촉되지 않고 또한 특별히 허용된 커뮤니케이션(privileged communication)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그 공표는 방해하지 않는다.

③구두공개에 의해 야기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책해가 없는 한 법은 어떠한 구제도 부여하지 않는다.

④프라이버시 권리는 해당개인에 의한, 또는 그의 동의에 의한 해당사실의 공개에 의해 소멸된다.

⑤공개된 사실의 진실성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⑥공개자의 무악의성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후에 계속되어진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는 1948 년 12 월 10 일 제 3 회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보장을 받아 세계적인 권리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즉, 세계인권선언의 제 12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Privacy), 가족, 가정 및 통신에 대하여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인간은 간섭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끝으로 프라이버시 권리의 개념을 소개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 윌리암 프로저(William L. Prossor)는 1960 년 프라이버시 권리를 아래 4 가지 유형으로 분류 규정하고 있다.

①개인의 사거, 사사에 대한 침입(intrusion)

②개인의 사약 사항에 대한 당혹케 할 공적폭로(Public disclosure)

③공중의 눈에 개인을 왜곡시키는 공표(publicity in false light)

④개인의 성명 또는 초상의 영리적 도용(appropriation)

제 1 유형은 개인 주거에의 무단 침입, 전화의 도청, 초상의 무단 촬영 같은 수단에 의하여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이며, 제 2 유형은사생활의 공표로서 개인 생활상의 일을 함부로 공표하거나 사진의 무단 공표, 개인의 병에 대한 상세한 보도, 채무 불이행 사실의 공표, 임대료 미지불에 대한 모욕적인 공표 및 행위의 경우를 말한다. 제 3 유형은 오해를 자아내는 표현으로서 공중으로 하여금 한 개인을 그릇 판단 혹은 오해를 자아내게 하는 표현, 범죄의 혐의가 벗겨진 추에도 한 개인의 사진이 범죄 앨범에 게재 발표되는 경우, 전문에 한 개인의 성명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을 포괄하며 제 4 유형은 성명, 초상 혹은 기타를 영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 개인의 인격 법익을 무단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3. 심층보도와 인격권과의 갈등

고발성 기획물인 심층보도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부터 초상권,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권리와 같은 인격권의 차원에서 그 갈등에 대한지적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심층보도과정에서 인격권의 침해라고 지적된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일요일 밤 9 시 KBS-1TV 의 <뉴스 파노라마>에서 방영된 『비틀거리는 양심-마취된 사회』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마초를 쟁점으로 다뤄 눈길을 끌었다. 역시 현장취재에

큰 어려움이 엿보였고, 특히 대마초를 직접 피워본 경험자를 찾아내 부끄러움 없이 체험담을 털어놓게 하는 숨은 노력을 매우 돋보인 기획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젊은 대마초 체험자의 얼굴이 다소 기술적인 처리로 내보여졌지만, 그 얼굴이 화면 가득히 몇 초 동안 계속, 내비치어짐으로써, 그가 누구인지를 알만한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게 만들었다. 예컨대 TV 의 사실성 강조가 지나치게 의식된 나머지 이 기획취재에 협조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소홀히 다뤄진 느낌을 주었다. 그들이 추후에 감수해야 할 선의의 피해가 어떻게, 얼마만큼 파생될지, 보다 신경을 써주기 위해 화면처리의 연구가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추적 60 분>의 『83 결혼 풍속도』의 경우만 해도, 캔디드 카메라(숨어 찍는 카메라)로 몰래 취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비리고발을 주제로 한 화면에 자기 얼굴과 목소리가 담겨져 나왔고, 또 언젠가는 『거리에 나선 어린이』를 방영하면서, 영등포부근의 합숙소 주변에 카메라를 들이대어 어린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화면에 노출시켰던 예가 그것이다. TV 의 위력이 크다는 것은 인권이나 사생활의 침해에도 그 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조선일보 1983 년 11 월 29 일)

–KBS 와 MBC–TV 는 지난해 봄에 있었던 을지병원 남편독살사건의 범인과 일문일답을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했다. 국민의 큰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 만큼 TV 에 범인이 공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KBS 와 MBC 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생방송중계를 위해 카메라 앞에 범인의 재연출을 요구해 보도를 했다. – (중략)– 한 피의자의 공식기자회견이 끝난 마당에 방송국을 위해 다시 장시간의 일문일답을 연출시킨 처사는 피의자의 인격을 존중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서울신문 1983 년 5 월 3 일)

–MBC–TV 의 <레이다 11> 『피서지의 두 얼굴은 유원지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파헤치고 건전한 행락질서를 제시한 매우 시의 적절한 프로였다. 시청자의 큰 호응을 받아서 그런지 이런 기획 조사물이 는 것은 좋지만 보도의 자유만큼시민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겠다는 아쉬움이 컸다. 이를테면, 무주구천동 계곡에서 처음 만난 젊은 남녀가 말 몇 마디에 뜻이 맞아 나이트클럽으로 직행하는 모습을 롱 쇼트로 몰래 찍은 사진과 도청까지 하면서 녹음한 대화내용을 공개하며 위락지의 퇴폐풍조를 고발하는 장면이 있었다. 문제는 이런 취재자세, 곧 은밀한 사적 행동까지 현장고발이란 명분아래 취재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함부로 공개되어도 되느냐는 점이다. – (중앙일보 1983 년 8 월 8 일)

이상과 같이 취재대상이 된 개인의 권익보호측면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TV 로 방영된 취재대상 단체나 기관에 대한 주권침해나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추적 60 분>을 통해 나간 기도원의 실태에 대한 보도는 방영 이후 사회여론이 기도원을 모두 비리단체로 몰아버렸고, 또 기도원에 가족을 둔 사람들은 얼굴을 못 들고 다니도록 사회가 매도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진 것 등이다. 이렇듯 매스 미디어의 보도적 기능의 하나인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언제나 그로 인해 빚게 되는 제 인격권과의 갈등을 고려해야 하게 되었다. 동전의 앞뒤처럼 이 두 가지 입장이나 문제는 언제나 함께 제시되는 것이고, 또

그때마다 갈등요소로 남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TV 의 기능론적 측면에서, 사실상 TV 를 비롯한 매스 미디어의 심층 보도물을 비판없이 수용해 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는 것을 올바로 인지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매스 미디어 특히 TV 매체와 같이 대중이 접촉하고 영향을 받기가 매우 용이한 사회체제로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 나가는 메시지 자체는 물론 그로 인해 생겨나게 될 여러 가지 여파에 대해 다각적이고도 꾸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 이런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심층보도가 제작될 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TV 의 심층보도를 제작에 참고가 될만한 제언을 몇 가지 정리해봄으로써 이 글의 끝을 맺고자 한다.

우선, 다루고자 하는 주제선정의 다양성을 기해서 특히, 정치적 분야의 문제점이나 비리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이 문제는 특히 언론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영방송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취재, 제작, 방영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상황의 정확한 전달이라는 방송윤리가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이와 같은 정확한 전달의 윤리성은 곧 책임 있고, 사명감 있는 심층보도의 이상적인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층취재보도는 결국 정부나 국민모두를 계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나친 인기주의나 상업성에 얽매이지 않도록 스스로의 제작양성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팽원순, "심층보도프로그램의 개발과 문제점:' 방송연구 (1983 년 겨울 호)

2) 장윤택, "KBS-TV 의 사회고발프로그램 현황": 방송연구 (1984 년 봄 호)

3) David L. Altheide, Robert P. Snow, "MEDIA LOGIC", London : SAGE publications, 1979.

4) J. Brown, R. Brown, Rivers, "The Media and the people",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8.

5) 최창섭 외 공저, '언론통제이론': 서울 :법문사,범 78.

6) 김규. "방송매체론", 서울 :법문사, 1976.

7) Mollenhoff, "Investigative reporting- from courthouse to whstehouse - "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1981.

8) 이상회, "방송론", 서울 법문사, 1982.

9) Comstock, "Television in America", The SAGE Commtext Series, 1980.

10) Cantor, "Prime- time television", The SAGE Commtext Series, 1980.

11) 조선일보 1983 년 11 월 15, 26, 29 일자, 1984 년 4 월 8 일자.

12) 중앙일보 1983 년 4 월 26 일. 8 월 8 일 10 월 7 일자.

13) 동아일보 1953 년 5 월 2 일자.

14) 한국일보 1983 년 5 월 24 일자.

15) 서울신문 1983 년 5 월 3 일자.

-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원 졸업 (방송학 석사)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대학원졸업 (신문학박사)

- 저술: 「방송조사 연구론」「매스컴통계 분석론」 외 다수

- 현재 서강대학교 신분방송학과 교수